

## 01 | 트럼프 2.0 행정부 관세정책 타임라인

발표	시행일	(부과)내용	(부과)근거
1.20.	-	대통령 취임 ('24.11.5. 트럼프 당선)	
2.4.	2.4.	중국(10%) 관세부과 개시, 멕시코·캐나다 1개월 유예 - 중국 연료·공산품 보복관세 부과(2.10~)	무역법 제301조
3.3.		중국(추가10%) 관세부과 행정명령 서명 - 중국 미 농축산물 추가 관세 부과 및 일부 미국기업 전략 물품 수출 통제(3.10~)	
3.4.	3.4.	캐나다(25%), 멕시코(25%), 중국(10%+10%) 추가 관세부과 개시	국제긴급 경제권합법(IEEPA)
3.5.	3.5	캐나다,멕시코산 자동차(USMCA 적용) 한정 1개월 관세 유예(~4.2.) - 캐나다(온타리오주) 미국 수출전기 25% 추가요금부과(3.10.)	
3.12.	3.12.	<b>모든 수입 철강·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 253개에 25% 관세 부과</b>	무역확장법 제232조
4.3.	4.3.	<b>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25% 관세 부과</b>	무역확장법 제232조 국제긴급 경제권합법(IEEPA)
	4.5. 4.9.	<b>상호관세 발표</b> - 보편관세 10%, 한국 25% 상호관세부과 - 보편관세, 기존 품목별 관세는 상호관세 추가 적용 대상 제외(중복X)	국제긴급 경제권합법(IEEPA)
4.5.	4.5.	미국 동부시간 기준 5일 0시 1분(한국시간 5일 오후 1시 1분) <b>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10% 보편관세 부과 정식 발표</b> - 캐나다, 멕시코 등 일부 예외 국가 제외	국제긴급 경제권합법(IEEPA)
4.9.	4.9.	미국 동부시간 기준 9일 0시 1분(한국시간 9일 오후 1시 1분) <b>해당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발표</b> - 한국 25%	국제긴급 경제권합법(IEEPA)
4.10.	4.10.	중국제외 70여개국 상호관세 90일간(~7/8) 유예 - 한국 10% 중국 총 125%로 관세 인상 부과 즉시 발표	-
4.11.	4.11.	중국에 도합 145% 관세부과 상호관세 90일 후 유예 연장 가능성 미정 발표	
4.13	4.13	스마트폰, 일부 컴퓨터, 전자제품 상호관세 및 보편관세 부과대상 제외 발표	
5.2	5.2	800달러 미만 중국산 직구 관세 면제 조항 폐지	
5.3	5.3	미국 동부시간 기준 3일 오전 0시 1분(한국시간 3일 오후 1시 1분) <b>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에 25% 관세 부과 공식 발표</b>	무역확장법 제232조
5.9	5.9	영국 자동차 10%로 관세 인하, 상호관세 10% 유지, 철강·알루미늄 관세 폐지	
5.12	5.14	중국 관세 인하 발표 (90일간 유효)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 관세 145% → 30%	
5.30	6.4	미국 동부시간 기준 4일 오전 0시 1분(한국시간 3일 오후 1시 1분) <b>모든 수입 철강·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 25%→50% 관세 인상 부과 발표</b>	무역확장법 제232조
6.12	6.23	냉장고,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 철강 함유 가치에 관세 50% 적용 232조 관세부과 대상 철강 파생 제품 추가 지정	무역확장법 제232조
6.17	6.23	미국 동부시간 기준 23일 오전 0시 1분(한국시간 23일 오후 1시 1분) 미국 내 소비를 목적으로 입항하거나 창고에서 반출된 상품에 대해 조치 적용	무역확장법 제232조
7.7	8.1	미국 동부시간 기준 1일 오전 0시 1분(한국시간 3일 오후 1시 1분) <b>한국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 연장 행정명령 (7월 9일에서 8월 1일 까지 상호관세 10% 유지)</b>	국제긴급 경제권합법(IEEPA)
7.17	8.1	미국 동부시간 기준 1일 오전 0시 1분(한국시간 1일 오후 1시 1분) <b>모든 수입 구리 제품 50% 관세 부과 시행</b>	무역확장법 제232조
7.30	8.29	미국 동부시간 기준 29일 오전 0시 1분(한국시간 29일 오후 1시 1분) <b>800달러 이하 소액 배송물 대상 미소기준 면세 특혜 종료</b>	국제긴급 경제권합법(IEEPA) 무역법 제301조

발표	시행일	(부과)내용	(부과)근거
7.31	8.7	미국 동부시간 기준 7일 오전 0시 1분(한국시간 7일 오후 1시 1분) <b>한국 상호관세 15% 부과 발표</b>	국제긴급 경제권한법(IEEPA)
8.11	8.12	중국 관세 부과 유예조치 90일 연장 (8.12~11.10)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 관세 30% 유지	
8.15	8.18	미국 동부시간 기준 18일 오전 0시 1분(한국시간 18일 오후 1시 1분) <b>철강·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대상 관세부과 시행(선적 기준 아닌 통관분부터 적용)</b>	무역확장법 제232조

<관세 부과 관련 근거 내용>

- 1) 무역법 제301조 :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여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 조항
- 2) 국제긴급경제권한법(IEEPA) : 1977년 제정된 법으로, 미국의 안보/외교/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,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특정국가에 경제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
- 3) 미국-멕시코-캐나다 협정 (USMCA) : USMCA를 준수하여 제조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경우, 미국 세관 당국이 관련 시스템을 마련할 때까지 관세 면제
- 4) 무역확장법 제232조 :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

## 02 | 미국의 주요 국가 협상 타결 현황

국가	타결일자	기존 관세율	합의 관세율	관세 부과 방식
영국	5.8.	자동차 27.5% 철강 25%	기본 10% 유지	G7 정상회의 중 발표(예비합의)
베트남	7.20.	46%	20%	제조업 품목 중심 협상
일본	7.22.	25%	15% (자동차 포함)	5,500억 달러 대미 투자 조건 포함, 일본 자동차, 트럭, 쌀, 농산품 등 자국 시장 일부 개방, 철강 관세 유지, 자동차 품목별 관세 관련 내용 별도 언급 없음
인도네시아	7.22.	32%	19%	미국산 수출품 관세 99% 철폐, 자동차·농산물 규제 면제, 주요 광물의 대미 수출 규제 완화, 미국산 항공기, 농산물, 에너지 구매, 디지털 서비스, 투자 장벽 해소 등
필리핀	7.24.	20%	19%	미국산 수입품에 무관세 적용, 필리핀 자국 시장 전면 개방, 농식품·디지털 협력 포함
EU	7.28.	30%	15%	15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에너지 구매, 6000억 달러 대미 투자 및 군사장비 구매, 자동차 적용 제외
한국	7.30.	25%	15% (자동차 포함)	미국, 반도체·의약품 추후 관세부과시 최혜국 대 우 부여 한국, 3,500억달러(487조원)의 대미 투자*, 1,000억달러(139조원) 규모의 천연가스(LNG) 구매 패키지를 제공
인도	8.6.	25%	50%	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직간접적 수입으로 추가 관세 부과 8.27.부로 상호관세(8.7~.,25%)에 25% 관세 추 가해 총 50% 관세
중국	8.12.	30%	5월 합의 관세 유예조치 90일 추가 연장 (8.12.~11.10.)	(미-중) 대중 30% 관세 유지 (종료 이후에는 54% 적용 예정) (중-미) 대미 10% 관세, 비관세조치(수출통제 등) 중단

\*\* 단, 철강·알루미늄은 협상 제외

### 03 | 미국의 관세별 부과 현황

구분	품목	관세율	발효(시행) 일자	관세 부과 방식
상호관세 <국가별>	전품목	기본관세 10%	4.5.	기본관세10%+차등관세5%
		상호관세 15%	8.7.	
품목별 관세 (232조)	자동차	25%	4.3.	기존 : 철강·알루미늄 합량 가치에만 25% 변경 : ① 철강·알루미늄 합량 가치에 50% ② 철강·알루미늄 非합량 가치에는 상호관세* * (-8.1.) 기본관세 10% (8.1.-) 상호관세 25%
	자동차 부품	25%	5.3.	
	철강·알루미늄	25%	3.12.	
		50%	6.4.	
	철강·알루미늄 파생상품	50%	6.4.	
구리 및 파생상품	50%	8.18.	철강·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 품목 추가	
			8.1.	부속서내 명기된 구리 합량 부분에만 50% 非 구리 합량 부분에는 상호관세(전세계), 펜나틸 관세(캐나다, 멕시코, 중국) 적용 * 단,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중복 적용 시,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우선 적용(구리 관세는 미적용) * 구리 원재료(광석, 정광, 매트, 음양극 등) 및 폐구리에는 50% 구리 관세 및 상호관세 미적용

#### ■ 철강·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관세부과 대상


- 대상품목 : 美 상무부, 철강·알루미늄 파생상품 50% 관세 대상에 파생상품 407건 추가
    - 미국 상무부 관보에는 관세부과 대상 추가 파생상품 공식 발표 407건으로 명시되어 있으나, 포고문의 부속서(Annex)에 명시된 실제 적용대상 HTS코드는 428건
    - [철강·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추가 부과 대상 HS CODE 다운로드](#)
    - [철강,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율표 연계표 다운로드](#)
  - 시행일자 : 미국 동부시간 기준 18일 0시 1분(한국시간 18일 오후 1시 1분) 통관\*부터 적용
    - \* 선적 기준이 아닌 통관분부터 적용
    -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되거나, 보세창고에서 반출되어야 함
- “entered for consumption”은 수입 신고(Entry Filing) 후 관세·세금을 납부하고 CBP의 통관승인(Release)까지 이루어진 상태 (eCFR 141.0a (f))
- In-Transit 예외 없이 모든 대상 품목에 대해 미 동부시간 기준 18일 0시 1분부터 적용
  - 단, 철강 파생상품의 경우 미국에서 용해(melted)및 주조된(poured)철강을 원재료로 하여 다른 국가에서 가공된 경우에는 적용 제외
  - ※ [관보 확인 링크 바로가기](#)
  - 자료처 : 코트라 리포트(8.20.)

## 04 | 미국의 관세 추가 부과 예고

- 반도체 : 8월 15일(현지시간)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를 둔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 차주 예정이었으나 지연 전망
- 의약품 : 8월 13일(현지시간)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를 둔 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부과 계획 발표 지연 전망
- 가구 : 8월 22일(현지시간)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를 둔 가구에 대한 관세조사 50일 이내 완료 후 관세 부과 발표 예정
-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중복시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율 적용 상이할 수 있음

## 05 |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미국 관세 대응 지원사업 안내

### ■ 미국 수출기업 한미FTA 집중 컨설팅 무료 지원



기업방문 1:1 FTA 컨설팅

원산지판정부터 사후관리까지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해드립니다.

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는 미국 수출기업의 집중 지원을 위해 한미FTA 집중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.

<전문 관세사 기업 방문 1:1 FTA 컨설팅>

- 미국-한국의 품목코드 확인
-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발급
- 품목별 관세율 확인 및 실익분석
- 사후검증 사전 준비 및 대응 등

☎ 신청문의 및 유선상담 : 1688-4684


ggfta.or.kr 기업회원으로 신청 가능

[🔗 컨설팅 신청 바로가기 클릭](#)

### ■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비 지원사업(아마존) 참가기업 모집

\$

최대  
300만원



경기북서부FTA통상진흥센터  
GYEONGGI NORTH FTA GLOBAL BUSINESS CENTER

2025  
온라인플랫폼  
마케팅 지원사업

신청기간 : ~2025.08.29(금) 13시까지

☎ 031-995-7482

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는 미국 아마존 플랫폼 운영의 활성화 및 안정화를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비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.

<지원대상 - 3항목 필수>

-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- 사업장 소재지(본점) 또는 공장소재지 경기도
- 공고일(8.20.) 기준 아마존(북미) 플랫폼 입점 후 운영중인 기업

<대상 국가 및 플랫폼>

- 아마존 북미

☎ 신청문의 및 유선상담 : 031-995-7482

이메일 제출 : [travis111@gsmba.kr](mailto:travis111@gsmba.kr)

[🔗 공고 바로가기 클릭](#)

## 05 | 관세조치 관련 추가 문의사항 연락망

부처/기관명	담당부서	연락처
산업통상자원부	통상법무기획과	044-203-5942
관세청	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	042-714-7538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	해외진출상담센터(미국 통상정책관련 관세 대응 119)	1600-7119
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	FTA활용팀	1688-4684